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200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채수지 의원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채수지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 제14조제3항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,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일 제보 내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산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- 그러나 상위법령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'개별 공익침해행위' 단위로 명시하고 있어, 동 조례와 상위 법령

과의 규정 체계가 상이함.

- 따라서 동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‘개별 공익침해행위’로 명확히 규정하여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산정·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‘개별 공익침해행위’로 규정하여 운영과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함(안 제14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채수지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00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‘개별 공익침해행위’로 명확히 규정하여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산정·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14조제3항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,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「법 시행령」)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산정시 공익침해행위를 개별 단위(「개별 공익침해행위」)로 규정하고 있으며, 각 개별 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전별 3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⁾.
- 이는 법 시행령 제정(2011년) 당시부터 보상금 산정 기준을 '개별 공익침해행위' 단위로 유지해 온 것으로,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규정을 정비·명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.
- 최근 3년간('23~'25.9.)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접수는 188건 ('23) → 103건('24) → 74건('25.9.)으로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으며, 제보 활성화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.
- 더욱이 보상금 지급은 최근 3년 동안 '23년 1건(20,859,560원)에 그치고 있어, 같은 기간 평균금액('23년 4건, 14,500,000원) 및 구

1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

제22조(보상금의 산정기준)①법 제26조의2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별표 2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(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)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
2.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·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
3.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
4.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
5.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조금 지원(총 28건, 285,851,310원) 대비 상대적으로 지급 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.

-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보상제도는 ‘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’로 구분되며,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재정상 이익에 대한 금전적 보상, 포상금은 공로에 대한 격려, 구조금은 신고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²⁾.

[표-1]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접수 현황(2023~2025년)

(단위: 건)

구분	2023	2024	2025.9.	합계
건 수	188	103	74	365

*출처: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

[표-2] 최근 3년간(2023~2025.9.) 서울시교육청 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 지급 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2023		2024		2025.9.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보상금	1	20,859,560	-	-	-	-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

제13조(구조금 등 지원)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, 입원, 투약,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
2. 전직·파견근무·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
3.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
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으로 하되, 그 산정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(이하 “월평균액”이라 한다)

나.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. 다만,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,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5.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

제14조(보상금)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금)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.

포상금	4	14,500,000	-	-	-	-
구조금	28	285,851,310	15	128,896,210	7	32,114,350

*출처: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

-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, 보상금 산정 기준에서 ‘개별 공익침해행위’ 단위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은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신고의 경우에도 각 행위별로 독립적으로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, 중복·유사 제보에 따른 산정 혼선을 방지하고 보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더욱이 이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·형평성이 높아지고, 유사 사례 간 집행 기준의 일관성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따라서 안 제14조제3항과 같이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제보자의 실질적 보상 체감도를 높이고, 공익제보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법 시행령이 보상금 지급 제외 하한액을 10만원('11.9.30.) → 20만원('14.9.2.) → 30만원('23.12.19.)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음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 동 조례는 제정당시(2014년)와 동일하게 하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법적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³⁾

3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[시행 2011. 9. 30.] [대통령령 제23198호, 2011. 9. 30., 제정]
제22조(보상금의 산정기준)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[시행 2014. 9. 2.] [대통령령 제25586호, 2014. 9. 2., 일부개정]
제22조(보상금의 산정기준)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“의견없음”을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‘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
지급하지 않는다. 또한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
다.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보상금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<u>와 산정된 보상금이 천원 단위 미</u></p> <p><u>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	<p>제14조(보상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개별 공익침해 행위로 인하여</u></p> <p><u>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</u></p> <p><u>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 또한</u></p> <p><u>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</u></p> <p><u>은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
<p>④ ~ ⑧ (생략)</p>	<p>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